
202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
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재공고 과제제안요구서(RFP)

목 차

3. RNA바이러스 감염병(Disease X)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.....	3
1. (RFP 3-1) RNA바이러스 감염병(Disease X)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.....	3
4. 감염병 예방·치료 기술개발	6
1. (RFP 4-1)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	6
12. 자살 관련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	9
1. (RFP 12-1) 정신질환자 자살예방 기술개발	9
14.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사업(R&D)	12
1. (RFP 14-1)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	12

RFP 3-1

RNA바이러스 감염병(Disease X)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

세부사업명 (내역사업명)	RNA바이러스 감염병(Disease X)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	사업유형 해당여부	■ 혁신도전형 R&D ■ 경쟁형 R&D		
제안요청서명	RNA바이러스 감염병(Disease X)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				
공모유형	☐ 지정공모 ☒ 품목지정 ☐ 자유공모 ☐ 정책지정	TRL 단계 (시작~종료) * TRL 단계 공모안내서 참고	의약품 TRL 3~6	기술료 납부대상	O

▶ 지원목적

- 미래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RNA 바이러스 생활사(life cycle)에 직접 작용해서 항바이러스 효능을 나타내는 근원적 치료제 기술 확보

▶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·학·연·병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근거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) 모두 가능
 - 단,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'기업' 참여 필수, 기업의 경우 단독 주관도 가능
 - 지원분야 ② 비임상, 임상1상 연구 2단계(3차~4차년도)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근거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참여 필수
- 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(3책 5공)에 적용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 ① : 후보물질 도출 및 최적화, 비임상연구

관리방식	단계별 마일스톤 기반 평가 (경쟁형 R&D로 단계별 평가 기반 엄격한 과제 수행관리)
지원기간/예산/과제수	○ 1단계 : 21개월 이내, 6개 과제 이내 - (1차년도, 9개월) 과제당 375백만원 이내 - (2차년도, 12개월) 과제당 500백만원 이내 ○ 2단계 : 24개월 이내, 3개 과제 이내 - (3차년도, 12개월) 과제당 1,000백만원 이내 - (4차년도, 12개월) 과제당 1,000백만원 이내 과제당 총기간 45개월 이내(21개월+24개월), 총예산 28.75억 이내

지원분야 ② : 비임상, 임상1상 연구

관리방식	단계별 마일스톤 기반 평가 (경쟁형 R&D로 단계별 평가 기반 엄격한 과제 수행관리)
지원기간/예산/과제수	○ 1단계 : 21개월 이내, 4개 과제 이내 - (1차년도, 9개월) 과제당 750백만원 이내 - (2차년도, 12개월) 과제당 1,000백만원 이내 ○ 2단계 : 24개월 이내, 2개 과제 이내 - (3차년도, 12개월) 과제당 1,500백만원 이내 - (4차년도, 12개월) 과제당 1,500백만원 이내 과제당 총기간 45개월 이내(21개월+24개월), 총예산 47.5억 이내

※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, 연구개발비는 9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

※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비 변동 가능

※ 선정 과제 수는 접수현황,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

※ PM·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

※ 1단계 종료시점('27년 12월)에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연구지원 추진

▶ 개념

- RNA 바이러스 생활사(life cycle)에 직접 작용해서 항바이러스 효능을 나타내는 근원적 치료제 개발
 - 다양한 RNA 바이러스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전의 항바이러스 약물
 - 단일 화합물 개발 과제만 지원 가능(혼합물, 추출물 개발 과제 제외)
 - 바이러스 생활사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면역조절 약물(항염증치료제, 면역치료제, 면역억제제 등) 개발 과제와 항체/혈장 치료제는 지원 불가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

지원분야	성과목표	연구내용(예시)
RNA바이러스 감염병(Disease X)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 도출 및 최적화, 비임상연구	(1단계) Non-GLP 생체 내 (in vivo)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이상 (2단계) GLP 비임상시험 검증 완료, 임상1상 IND 승인	○ 바이러스 부착 및 침투 억제 치료제 개발 - 바이러스와 숙주세포의 수용체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 개발 -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에 침입하여 외피를 탈피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 개발 ○ 바이러스 증식 억제 치료제 개발 - 바이러스 단백질이나 펩티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를 억제하는 물질 개발 - 바이러스의 복제물질과 유사하여 복제 시 오류를 일으키거나 복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 개발 - 뉴클레오사이드와 다른 기전으로 바이러스 유전물질 복제를 억제하는 물질 개발 ○ 바이러스 조립/방출 억제 치료제 개발 - 바이러스의 입자 조립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 조립 또는 방출 저해제 개발 ○ RNA 바이러스 생활사 저해 치료제 개발 - 상기 3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지만 바이러스 생활사를 저해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 - 바이러스 생활사의 모든 단계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법을 통해 효과가 증명된 항바이러스 물질의 발굴 및 개발 (정확한 기전이 확인되지 않은 후보물질 포함) ※ 기존에 개발된 항바이러스제의 작용방식과 다른 접근방식 또는 작용기전을 이용한 항바이러스제 개발 등 창의성·혁신성·도전성 연구내용이 포함된 항바이러스제 개발 권장 (선정평가 항목 중 '연구의 도전성 및 혁신성(30)' 및 '혁신도전형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(10)'에 해당)
RNA바이러스 감염병(Disease X)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비임상, 임상1상 연구	(1단계) GLP 비임상시험 검증 완료, 임상1상 IND 승인 (2단계) 임상1상 완료, CSR(Clinical Study Report) 보고서 제출	

※ 본 성과 목표는 최소 요구성과이며, 이외 연구자가 혁신적·도전적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해야 함

※ 상기 성과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 성과목표 추가 가능

▶ 특기사항

- 외부 기술을 도입한 경우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함

▶ 일반사항
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주요사항
 - 최종 산출물의 프로파일(Target Product Profile) 및 기술성숙도(TRL)에 근거, 연구 기간 종료 시점에 측정·가능한 목표 달성 전략제시
 - 총 연구기간 동안 연차별 마일스톤(정량지표)을 제시
 -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및 참여연구진 간의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방안 제시
- ※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 평가를 통해 실적달성 여부를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 예정
- 개발하고자하는 타겟질환(바이러스) 외 다른 질환(바이러스)에 대한 적용가능성 및 방안 제시

- 일반적인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」 참고
- 과제 선정 후 주요사항
 - 연구과제에 대한 PM·과제평가단의 마일스톤 점검(월별/분기별) 예정, 연구책임자(기관)은 마일스톤 점검 및 후속조치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하며, 마일스톤 점검결과는 단계/최종/특별평가시 핵심 자료로 활용 예정
 - 마일스톤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년차/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○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가·감점 중 하기 기술된 내용에 한하여 적용함 * (적용기준 및 방법) 연구개발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적용하며, 최종점수 산정단계에서 1개 가점만 적용(중복적용은 하지 않음) - (가점) 최종평가 가점, 기술이전·기술료 납부실적 우수연구자 가점, 혁신형 제약기업 가점, 여성과학자 육성 가점, 지역인재 육성 가점 - (감점) 연구포기·중단경력 감점,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	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서면· 발표 평가	○ 연구의 도전성 및 혁신성(30)	- 현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음 - 제시한 연구목표가 도전성과 혁신성을 포함하고 있음
	○ 혁신도전형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(10)	- 혁신도전형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- 제안요청서(RFP)의 목표와 지원내용의 적절함
	○ 연구 추진전략 및 내용의 적정성(20)	- 연구개발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- 연구 추진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함
	○ 연구개발 역량(20)	- 연구책임자가 성과목표를 달성가능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음 - 연구개발기관이 성과목표를 달성가능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
	○ 사회적 이슈 해결 기여도(10)	- 연구결과가 범지구적·사회적 난제 해결에 기여함
	○ 연구과정의 파급효과(10)	- 연구과정이 향후 과학 기술적 발전에 기여함 - 연구과정이 향후 후속 연구에 기여함 - 연구결과가 국민건강증진, 공공복지실현에 기여함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RFP 4-1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

세부사업명 (내역사업명)	감염병 예방·치료 기술개발 (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)	사업유형 해당여부	☐ 혁신도전형 R&D ☐ 경쟁형 R&D
제안요청서명	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		
공모유형	☐ 지정공모 ☒ 품목지정 ☐ 자유공모 ☐ 정책지정	TRL 단계 (시작~종료) * TRL 단계 공모안내서 참고	의약품 TRL 3~6 기술료 납부대상 O

▶ 지원목적

-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예방·치료·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치료제 개발 및 이를 위한 기반기술 지원
 - 미해결 치료제 기술개발 연구

▶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		지원기간	연간 연구개발비 (1차년도)	선정 예정 과제수
바이러스성 감염병 치료제	바이러스성 감염 치료제 개발		3년 이내	1,000백만원 이내 (750백만원 이내)	1개
세균 및 진균 감염병 치료제	항진균제 내성진균 감염 치료제 개발	칸디다증	3년 이내	800백만원 이내 (600백만원 이내)	1개
		침습성 균증 원인균 (칸디다균 외)	2년 이내	333.3백만원 이내 (249.975백만원 이내)	3개

※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, 연구개발비는 9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

※ 1차년도 지원기간은 협약시점이 변동되어도 연구 완료 시점은 변동 없으며, 협약시점 변동에 따른 1차년도 연구비 지급액 변동 가능

※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비 변동 가능

※ 선정 과제 수는 접수현황,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

지원분야	성과목표	연구내용(예시)
바이러스성 감염 치료제	임상 2상 IND 승인	○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등 - 기능적 완치*를 위한 새로운 기전의 B형 간염 치료제 개발 * HBsAg loss(HBV 표면 항원 음전)의 유도 가능 - 기존 핵산유도체와 기전이 다른 치료제 개발 - HBV cccDNA를 타겟하는 표적 치료제 - 용량·내약성 임상시험, 단독과 반복 투여에 따른 약동학/약력학 임상시험, 약물상호작용 임상시험 등

지원분야		성과목표	연구내용(예시)
항진균제 내성진균 감염 치료제 개발	칸디다증	GLP 비임상시험 검증 및 임상 1상 IND 승인	○ 항진균제 내성 칸디다(Candida spp.) 감염증 치료제의 개발 - IND 신청 및 승인을 위한 비임상 독성시험, in vitro/in vivo 유효성 평가,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공정 연구, 약동/약력학 연구, MOA 연구 등
	침습성 균증 원인균 (칸디다균 외)	후보물질에 대한 안전성·유효성 평가시험 완료	○ 항진균제 내성 침습성 균증 원인균(칸디다균 외) 치료제의 개발 - 우수한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합성연구, in vitro/in vivo 유효성 평가, 예비독성, 초기 DMPK, MOA 연구 등

- ※ ‘후보물질에 대한 안전성·유효성 평가시험’에 동물실험의 안전성·유효성 시험 데이터 확보 필요
- ※ 최종 산출물의 프로파일(TPP, Target Product Profile) 및 기술성숙도(TRL)에 근거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마일스톤 제시 필수
- ※ 상기 성과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 성과목표 추가 가능
- ※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제시할 경우, 연구진행에 따른 서류 필수 제출
(예시. 임상1상 완료 후 임상2상 IND 승인을 목표로 할 경우 : 임상1상 IND 승인서 필수 제출)
- ※ 지원분야(바이러스성 감염병 치료제, 세균 및 진균 감염병 치료제)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(다만,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3책 5공 준용)

▶ 특기사항

- 경쟁률, 선정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서 지원분야 내 선정 예정 과제수, 최종 지원연구개발비는 조정될 수 있음

▶ 일반사항
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주요사항
- 본 RFP에 해당하는 TRL 단계에 맞게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제시
 - 총 연구기간 동안 연차별 마일스톤(정량지표)을 제시
 -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및 참여연구진 간의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방안 제시
- ※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 평가를 통해 실적달성 여부를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 예정
- 일반적인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」 참고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해당사항 없음
------	---------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 항목	소 항목
서면· 발표 평가	1. 연구개발 계획(60)	○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(05) - 제안요청서(RFP)의 목표와 지원내용의 적절함 -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○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(15) 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함 - 연구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 ○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(15) -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우수함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(20) -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과 계획이 구체적이며, 충실함

		- 연구 추진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함 - 목표달성 과정 중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 및 극복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○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(05) -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임
	2. 연구개발 역량(20)	○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(10) -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음 ○ 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 능력(10) -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
	3. 연구개발 성과(20)	○ 연구의 성공가능성(10) -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·경제·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음 -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및 확산 계획이 충분히 고려됨 ○ 연구결과의 파급효과(10) - 연구결과가 국민건강증진, 질병극복, 공공복지실현에 기여함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RFP 12-1 정신질환자 자살예방 기술개발

세부사업명 (내역사업명)	자살관련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 (자살개입기술개발)	사업유형 해당여부	☐ 혁신도전형 R&D ☐ 경쟁형 R&D		
제안요청서명	정신질환자 자살예방 기술개발				
공모유형	☐ 지정공모 ☒ 품목지정 ☐ 자유공모 ☐ 정책지정	TRL 단계 (시작~종료)	해당없음	기술료 납부대상	X

▶ 지원목적

- 정신질환자(도시형, 농촌형, 알콜중독)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위기개입 기술개발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문제 해결

▶ 지원대상

-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은 대학 또는 병원만 가능
- 주관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임상의* 1인 이상 구성 필수
 - * 임상수련과정을 마치고 진료업무가 있는 M.D.(Medical Doctor)를 의미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간 연구개발비 (1차년도)	선정 예정 과제 수
정신질환자 자살예방(농촌형)	4년 이내(2+2)	500백만원 이내 (375백만원이내)	1개

※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, 연구개발비는 9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

※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비 변동 가능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

지원분야	성과목표		연구내용
정신질환자 자살예방 (농촌형)	1단계 (‘26~’27년)	① 정신질환자 자살예방 프로그램 1건 * 종사자용 매뉴얼, 정신질환자용 워크북 포함 ② 학문(질환) 영역별 IF 상위 30% 이내 SCI(E) 논문 1편 이상 게재 ※ ①, ②의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여야 함	○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자살예방 사업의 국내·외 현황조사 및 분석 ○ 자살고위험 정신질환자(조현병, 양극성장애, 우울장애)의 자살예방 서비스모델 개발 * 각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유입전략 포함 ○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기반 자살고위험 정신질환자 자살예방(사례관리·위기개입 등) 농촌형 프로그램 개발 * 지역사회 기관의 인프라, 역량 등을 고려
	2단계 (‘28~’29년)	① 정신질환자 자살예방 시범사업 보고서 1건 *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분석 포함 ② 학문(질환) 영역별 IF 상위 30% 이내 SCI(E) 논문 2편 이상 게재	○ 지역사회기반 자살고위험 정신질환자 자살예방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및 전문가 종사자 의견수렴 ○ 현장 적용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종사자용 매뉴얼 및 교육과정, 환자용 워크북 개발 ○ 유관기관 대상 정신질환자 자살예방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및 종사자 교육 ○ 지역사회기반 자살고위험 정신질환자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실증

지원분야	성과목표	연구내용
	③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※ ①, ②, ③의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여야 함	* 농촌지역 150명 이상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소 4개 기관 이상 참여 필수 ○ 시범사업의 종사자·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효과성 분석
※ 상기 성과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 성과목표 추가 가능		

▶ 특기사항

- 연구성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(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자살예방센터 등) 협업 필수
- 원활한 현장실증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실적, 참여의향서(또는 업무협약서) 등을 2단계 연구 시작 전까지 제출 필수
-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과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, 알코올 중독자, 정신건강 증진시설 종사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
- 개발된 성과물은 공공목적을 위해 정부의 정책활용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, 그 활용을 위해 교육,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연구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
- 과제 선정 후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 컨설팅, 성과교류회 등 총괄과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 여부는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지 중요한 지표로 평가 예정
- 주관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자살관련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사업 RFP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(중복지원 불가)

▶ 연구데이터관리계획(DMP) 제출 관련 공통사항

-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(Data Management Plan, DMP) 제출 필요
 -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 활용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과제 신청시 DMP를 제출하여야 함(계획서 첨부 양식)
- * 연구데이터란 「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의미하며, 임상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임상·역학 데이터를 포함함
- 수집된 연구데이터는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기탁·등록보존기관인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(Clinical & Omics Data Archive, CODA)에 등록·기탁해야 함
- 인간(사람)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포함하는 경우, CODA에 등록·기탁 가능한 동의를 구득해야 함(동의서 필수 내용은 과제 선정 후 CODA와 협의 필요)
- 본 사업을 통해 생산·수집되는 데이터는 「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」의 용어표준(Korea Core Data for Interoperability, KR CDI)을 준용해야 함(고시에 없는 데이터는 SNOMED CT(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)를 준용할 것을 권고함)
- 평가단계별(선정, 단계, 최종)로 DMP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고,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정·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함
- 최종보고서 제출 시 CODA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함
- 등록·기탁된 데이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즉시 공개가 원칙

▶ 일반사항
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주요사항
 - 본 RFP에 해당하는 TRL 단계에 맞게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제시
 - 총 연구기간 동안 연차별 마일스톤(정량지표)을 제시
 -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및 참여연구진 간의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방안 제시
- ※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 평가를 통해 실적달성 여부를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 예정
- 일반적인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」 참고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해당 없음
------	-------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·발표 평가	1. 연구개발 계획 (60)	○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(10) - 제안요청서(RFP)의 목표와 지원내용에 부합함 -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○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(10) 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함 - 연구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 ○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(10) -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음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(20) - 연구개발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함 - 연구 추진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함 ○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(10) -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임
	2. 연구개발 역량 (20)	○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의 우수성 (10) -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음 ○ 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 능력의 우수성(10) -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
	3. 연구개발 성과 (20)	○ 연구의 성공가능성(10) -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·경제·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음 -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및 확산 계획이 충분히 고려됨 ○ 연구결과의 파급효과(10) - 연구결과가 국민건강증진, 질병극복, 공공복지실현에 기여함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RFP 14-1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

세부사업명 (내역사업명)	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(R&D) (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)	사업유형 해당여부	☐ 혁신도전형 R&D ☐ 경쟁형 R&D		
제안요청서명	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				
공모유형	☐ 지정공모 ☐ 품목지정 ☒ 자유공모 ☐ 정책지정	TRL 단계 (시작~종료) * TRL 단계 공모안내서 참고	3~9	기술료 납부대상	X

▶ 지원목적

- 첨단바이오 분야에 AI·빅데이터 박사급 인재 채용을 지원하여 국내 AI·바이오 융합연구 성과 창출

▶ 지원대상
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AI·빅데이터 관련 연구 인력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를 희망하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*
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
- (연구책임자)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자로 관련 기술개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
- (유치후보 연구자) 채용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

첨단바이오 융합인재기준	▪ 박사학위 취득(전공 무관) 후 AI, 빅데이터 관련 분야 연구업적 3편* 이상 보유한 자 또는 AI·빅데이터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을 보유한 자 * 예시 : 논문 1편 및 특허 2건, 단독 저작 저서 1건 등
-----------------	---

-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유치후보 연구자로 지원함
- 연구개발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 - 단, 과제당 지원금액은 최대 7.5억원이며, 1.5억당 1명의 인재를 의무 채용하여야 함
- 유치후보 연구자는 연구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정하여야 함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 (1차년도)	연간 연구개발비 (1차년도)	선정 예정 과제수
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	2년 이내 (9개월 이내)	1.5억원 (1.1억원)	50개 이내

※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,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연구비변동 가능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라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 매칭 필수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

지원분야	성과목표	
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	<과학·경제적 성과지표>	① 특허 출원 또는 등록 1건 이상 ② 실증 및 상용화 건수* 1건 이상 * 후보물질 발굴, 시제품제작 및 성능검증 등 산업적 결과물 확보 ※ ① 또는 ② 중 하나의 성과목표를 지정하고 달성하여야 함
	<고용·사회적 성과지표>	① 연구인력 채용만족도 또는 산업현장 융합연구인력 부족 완화 기여도 85점 이상 ② 고용유지율 70점 이상 ※ ① 또는 ② 중 하나의 성과목표를 지정하고 달성하여야 함.

※ 특허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연구개시 6개월 이후 출원된 실적만 인정

※ 상기 성과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의 성과목표 추가 가능

▶ 특기사항

- 참여연구자 유치 시 연구비 총액의 60% 이상의 인건비 계상 필요
- 인재 채용은 공고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채용된 자는 인정하되, 인건비의 소급적용은 불가.

▶ 연구데이터관리계획(DMP) 제출 관련 공통사항

-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(Data Management Plan, DMP) 제출 필요
 -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 활용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과제 신청시 DMP를 제출하여야 함(계획서 첨부 양식)
 - * 연구데이터란 「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의미하며, 임상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임상·역학 데이터를 포함함
 - 수집된 연구데이터는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기탁·등록보존기관인 보건 의료 연구 자원 정보 센터(Clinical & Omics Data Archive, CODA)에 등록·기탁해야 함
 - 인간(사람)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포함하는 경우, CODA에 등록·기탁 가능한 동의를 구득해야 함(동의서 필수 내용은 과제 선정 후 CODA와 협의 필요)
 - 본 사업을 통해 생산·수집되는 데이터는 「보건 의료 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」의 용어표준(Korea Core Data for Interoperability, KR CDI)을 준용해야 함(고시에 없는 데이터는 SNOMED CT(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)를 준용할 것을 권고함)
 - 평가단계별(선정, 단계, 최종)로 DMP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고,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정·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함
 - 최종보고서 제출 시 CODA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함
 - 등록·기탁된 데이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즉시 공개가 원칙

▶ 일반사항
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주요사항
 - 본 RFP에 해당하는 TRL 단계에 맞게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제시
 -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연구자의 인재유치 및 육성계획,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방안 제시
 - 총 연구기간 동안 연차별 마일스톤(정량지표)을 제시
 - ※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 평가로, 실적달성 여부를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 예정
- 일반적인 사항은 「보건 의료 기술 연구 개발 사업 가이드라인」 참고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 -		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 항목	소 항목
서면 · 발표 평가	1. 사업목적과의 부합성(20)	○ 연구개발기관 신청분야 국가정책 부합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(10) ○ 연구개발기관 및 분야의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유치 필요성(10)
	2. 인재 선정 및 유치(20)	○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선정기준의 적합성 및 구체성(10) ○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유치역량 및 유치계획의 충실성(10)
	3. 인재 활용 연구계획(40)	○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역량(15) ○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활용한 연구개발과제의 차별성(15) ○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활용계획(연구내용·목표 등 포함)의 우수성 및 구체성(10)
	4. 인재지원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(20)	○ 연구개발기관의 융합인재 지원의지 및 지원계획의 구체성(10) ○ 연구종료 후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향후 활용계획(10)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